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김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1. 25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경고(5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가. 그린솔라론 기성고 지급 부적정

- 최종 기성고 20% 지급 시 사용전 검사 및 발전설비 보험가입이 완료되었다고 하여 RPA 기관 등에 전기 매출채권과 REC매도채권의 양도통지 없이 기성고를 지급하였고, 최종 기성고 지급 후 최대 8개월이 지나서야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 기성고 지급 업무를 부적정하게 하였음.

나. 그린솔라론 사후관리 소홀

- 채권양도 통지 및 계좌 변경 확인을 소홀히 하여 감사일 기준 전력거래대금이 지점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5편 제688조(채권보전), 제691조(자금운용), 제692조(채권양도 통지 및 확인절차), 제696조(대출한도)

제재내용 공시

1. 조합명 : 김제수협

2. 제재조치(요구)일 : 2024. 11. 25.

3. 제재조치(요구)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직원	경고(4명)

※ 향후 관련 내규 등에 따른 이의신청(재심) 처리결과에 따라 제재조치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음

4. 제재대상 사실

○ 기업운전자금 대출심사 및 자금용도 사후점검 소홀

- 차주에게 기업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징구하는 등 사후점검은 실시하였으나,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전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음.

< 관련법규 >

1. 「상호금융 여신규정」 제10조(심사 및 승인)
2. 「상호금융 여신업무방법」 제3편 제2조(업무취급 원칙), 제68조(자금용도 사후점검), 제70조(사후점검 방법)